

금리인하요구권안내문

금리인하요구권이란?

대출실행 이후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차주(기업) 및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나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2. 행사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 내부 세부심사/운영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차주께서는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 3. 차주는 대출취급일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간 2회에 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4. 세부행사요건(기업여신)
 - ①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
 - ②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
 - ③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
 - ④ 차주가 추가담보를 제공한 경우
 - ⑤ 기타 내부운영기준을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
 5. 대출 차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에게만 심사결과가 통보(10영업일 이내)됩니다.
- ▶ 신청방법(유선 및 서면 등)
- 유선/FAX : (대표번호) T. 02-3457-6300 / F. 02-3457-6311
 - 서면 : (06194)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15 층
포스코기술투자(주) 기업금융그룹 기업여신담당자 앞